

2024년도 인천항 물동량 인센티브 지급기준

※ 공통사항

○ 실적 적용 대상 기간 : 2024.01.01. ~ 2024.12.31.

○ 주요 일정

2024.4분기	2025.1분기	2025.2분기	2026.1분기
1차 인센티브 접수·지급 포워더-③(인천시)	→ 2차 인센티브 접수 →	2차 인센티브 지급 →	3차 인센티브 접수·지급 선사-①(신규항로)
	선사-②~④, 화주-①~③, 포워더-①~②		

○ 예산 및 산정·지급 관련 사항

- 추후 확정되는 인천항만공사 및 인천광역시 예산 편성 규모에 따라 금액 등 지급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
- 인센티브 지급액은 천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함
- 국외 소재 업체의 경우, 한국 지사 또는 국내 대리점으로 지급 가능하며 해외송금은 불가함
- 단가제 인센티브의 경우, 동일 기준(항목) 내 잔액 발생 시 단가를 증액하고, 배정예산 초과 시 단가를 감액하여 지급함
- 실적비례제 인센티브의 경우, 각 기업의 수령액은 기준별(항목별) 배정예산 중 50%를 초과할 수 없음

○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,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음

- 인천항 항만시설사용료 미납 업체
-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신청·지급 받거나 불법적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

○ 지급기준의 문구·용어 해석, 기타 제도운영 관련 이견이 있는 경우 인천항만공사의 해석에 따름

□ 선사 인센티브

◎ 검증 방법 : PORT-MIS 선사코드별 신고 물동량을 기준으로 하며 오차 발생 시 IPA 검증 물량 적용

· [기준1] 신규항로

구 분	주요 내용				
대 상	- 2024년 인천항을 기항하는 '컨' 신규항로 개설 선사 또는 미주·유럽 항로 유지 선사 · 1년 유지 필수, 주 1회 서비스 기준 개설 후 1년간 35항차 이상 기항 및 1.5만 TEU 이상 처리 필수				
산 식	- (실적비례제) 항로별 인센티브 한도 내 선박 투입 기간 기준으로 분할 지급 · 항로별 인센티브 한도				
	지역	미주·유럽	서남아·중동·아프리카·대양주	동남아·극동러시아	중국·일본 등 기타 지역
비 고	한도	신규 4억원 유지 3억원	신규항로 3억원	신규항로 2억원	신규항로 1억원
비 고	- 예산 편성 규모에 따라 항로별 인센티브 한도가 조정될 수 있으며, 이때 미주·유럽 신규·유지항로에 우선 지급하고, 이외 지역은 잔액 범위 내에서 지역별 기존 한도 비율(3:2:1)대로 재조정 - 신규항로는 해당 선사가 인천항에서 제공하지 않던 항로에 한정하고, 조정의 경우 기존 국외 기항지 중 50% 이상 변경 시에만 신규항로로 간주하며, 기타 신규항로 인정이 어려운 경우 「인센티브 지급 심의위원회」 논의 결과에 따라 인천항만공사가 결정 - 지역 구분은 PORT-MIS 시스템에서 분류하는 지역코드에 따름 - 주 0.5회 서비스의 경우, 타 조건을 모두 충족하되 18~34항차 기항 시 항로별 인센티브 한도의 50% 지급				

· [기준2] 특별항차

구 분	주요 내용					
대 상	- 2024년 '컨' 특별항차를 통해 인천항을 기항하는 선사					
산 식	- (단가제) 물동량별 인센티브 한도(적/공/수출/수입/환적 모두 인정, Phase In/Out 포함)					
	물동량(TEU) 단가(백만원)	300~499 3	500~999 10	1,000~1,999 15	2,000~2,999 20	3,000 이상 30
비 고	- 본 인센티브는 해운 시장 변동성 증대로 2024년 한시 운영 - 선사가 제출한 특별항차 실적에 대해 대상 여부를 검증하며, 기타 특별항차 인정이 어려운 경우 「인센티브 지급 심의위원회」 논의 결과에 따라 인천항만공사가 결정					

· [기준3] 수출입 물동량

구 분	주요 내용													
	항목① - 규모형	항목② - 증가형												
대 상	- 2024년 인천항 처리 '컨' 물동량 규모 1~5위 선사 (연간 10만 TEU 이상 처리 필수)	- 2024년 인천항 처리 '컨' 물동량이 전년 대비 2% 이상 증가한 선사 (연간 2만 TEU 이상 처리 필수)												
산 식	- 단가제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1위</th> <th>2위</th> <th>3위</th> <th>4위</th> <th>5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단가(천만원)</td> <td>8</td> <td>7</td> <td>6</td> <td>5</td> <td>4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1위	2위	3위	4위	5위	단가(천만원)	8	7	6	5	4	- (단가제) 전년 대비 증가 물동량 X TEU당 3,000원
구분	1위	2위	3위	4위	5위									
단가(천만원)	8	7	6	5	4									
비 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적/공/수출/수입/환적 '컨' 물동량을 실적에 반영 - 전년도 실적이 없는 기업은 당해 실적 모두 증가 물동량으로 적용 가능 - 항목①,②에 모두 해당할 시 둘 중 수령액이 더 큰 항목에서 지급하며, 중복 수령 불가 - 규모형 인센티브 대상 선사가 증가형 인센티브 수령 시 차순위 선사에게 규모형 인센티브 지급 													

· [기준4] 환적

구 분	주요 내용
대 상	- 2024년 인천항 '컨' 환적(적/공) 물동량 1,000TEU 이상 처리 선사
산 식	- (단가제) 환적 물동량 X TEU당 5,000원

□ 화주 인센티브

◎ 검증 방법 : 업체에서 제출한 B/L 및 수출입신고 실적을 기준으로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검증하며, 오차 발생 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검증 물량 적용

· [기준1] 수출 물동량

구 분	주요 내용
대 상	- 2024년 인천항 처리 '컨' 수출 화물의 총 중량톤(G.W.T)이 전년 대비 2% 이상 증가한 화주
산 식	- (실적비례제) 예산 × 전년 대비 증가 물동량 ÷ 대상 업체 증가 물동량 합계
비 고	- 전년도 실적이 없는 기업은 당해 실적 모두 증가 물동량으로 적용 가능

· [기준2] 전략지역

구 분	주요 내용
대 상	- 2024년 인천항의 전략지역(미주·유럽·인도·중동) 직항항로를 이용하여 '적' '컨' 20TEU 이상 수출한 송하인(SHIPPER) 또는 수입한 수하인(CONSIGNEE) ※ 포워더 또한 신청 가능하며, 동일 건에 대해 실화주·포워더 중복 신청 시 실화주에게만 지급
산 식	- (단가제) 수출 물동량 X TEU당 40,000원, 수입 물동량 X TEU당 20,000원
비 고	- 예산 초과 시 수출 물동량에 대해 우선 지급 - 증빙은 MASTER 및 HOUSE B/L을 기준으로 하고, 수출은 SHIPPER, 수입은 CONSIGNEE가 지급대상 (단, MASTER DIRECT BL은 LC 건의 경우에만 NOTIFY PARTY도 인정 가능하며, 인천항만공사의 판단에 따름)

· [기준3] 냉동·냉장(Reefer)

구 분	주요 내용
대 상	- 2024년 인천항을 통해 냉동·냉장 '적' '컨' 10TEU 이상 수출한 송하인(SHIPPER) - 2024년 인천항을 통해 미주·유럽으로부터 냉동·냉장 '적' '컨' 10TEU 이상 수입한 수하인(CONSIGNEE) ※ 포워더 또한 신청 가능하며, 동일 건에 대해 실화주·포워더 중복 신청 시 실화주에게만 지급
산 식	- (단가제) 대상 물동량 X TEU당 50,000원
비 고	- 예산 초과 시 수출 물동량에 대해 우선 지급 - 증빙은 MASTER 및 HOUSE B/L을 기준으로 하고, 수출은 SHIPPER, 수입은 CONSIGNEE가 지급대상 (단, MASTER DIRECT BL은 LC 건의 경우에만 NOTIFY PARTY도 인정 가능하며, 인천항만공사의 판단에 따름)

□ 포워드 인센티브

◎ 검증 방법 : 업체에서 제출한 B/L 및 수출입신고 실적을 기준으로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검증하며, 오차 발생 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검증 물량 적용

· [기준1] 수출 물동량

구 분	주요 내용													
	항목① - 규모형	항목② - 증가형												
대 상	- 2024년 인천항 처리 '컨' 수출 화물의 총 중량톤(G.W.T) 규모 1~5위 포워드 (연간 1만 톤 이상 처리 필수)	- 2024년 인천항 처리 '컨' 수출 화물의 총 중량톤 (G.W.T)이 전년 대비 2% 이상 증가한 포워드												
산 식	- 단가제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1위</th> <th>2위</th> <th>3위</th> <th>4위</th> <th>5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단가(천만원)</td> <td>5</td> <td>4</td> <td>3</td> <td>2</td> <td>1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1위	2위	3위	4위	5위	단가(천만원)	5	4	3	2	1	- (실적비례제) 예산 × 전년 대비 증가 물동량 ÷ 대상 업체 증가 물동량 합계
구분	1위	2위	3위	4위	5위									
단가(천만원)	5	4	3	2	1									
비 고	- House B/L을 기준으로 수출입신고 포워드 코드(통관고유부호 알파벳 4자리)의 실적을 산정 - 전년도 실적이 없는 기업은 당해 실적 모두 증가 물동량으로 적용 가능 - 항목①,②에 모두 해당할 시 둘 중 수령액이 더 큰 항목에서 지급하며, 중복 수령 불가 - 규모형 인센티브 대상 포워더가 증가형 인센티브 수령 시 차순위 포워더에게 규모형 인센티브 지급													

· [기준2] 복합운송 (Sea&Air, Air&Sea)

구 분	주요 내용
대 상	- 2024년 인천항을 통해 Sea&Air 또는 Air&Sea 복합운송 실적 보유 포워드
산 식	- (실적비례제) 예산 × 업체별 물동량 ÷ 대상 업체 물동량 합계
비 고	- 환적을 통한 복합운송 실적만 인정하며, 수출입 환적 물동량이 다를 경우 더 작은 물동량을 실적으로 인정 - 수출 또는 수입 환적 중 한 가지만 처리했을 경우 수출입 물동량 중 50% 인정

· [기준3] 인천시 포워드

구 분	주요 내용
대 상	- 인천광역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포워드 중 2024년 1~3분기 중 인천항 처리 '적' '컨' 수출입 화물의 총 중량톤 (G.W.T)이 200톤 이상인 업체
산 식	- (균등배분제) 예산 ÷ 대상 업체 수
비 고	- House B/L을 기준으로 수출입신고 포워드 코드(통관고유부호 알파벳 4자리)의 실적을 산정 -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47조 및 시행규칙 10조와 관련하여 당해연도에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지급대상 제외